

『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5월 6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5월 7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5월 15일

제23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행정안전국장 김 종 울

나. 제안이유

-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 시민들의 직·간접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해 피해 극복과 지역경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.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시세를 감면하고자 함.

다. 감면대상자

○ 확진자 및 격리자

-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된 자 중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

○ 개인사업자

- 「지방세법」 제75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소를 둔 개인

○ 착한임대인

-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 또는 1개월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77조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제외

○ 중소기업

-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

라. 세목별 감면내용

○ 주민세 균등분

- 확진자 및 격리자가 포함된 세대에 부과되는 2020년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면제한다.
-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2020년 개인사업장 균등분 주민세를 면제한다.

○ 재산세

- 확진자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주택에 한하여 2020년 재산세 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를 면제하되,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소유 주택을 포함한다.
- (착한임대인) ①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중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과세 기준일 이전 또는 과세기준일 포함하여 건축물의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 또는 1개월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「지방세법」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라 계산한 2020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면적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.

1. 재산세액이 인하한 임대료의 합계액 이하인 경우 재산세를 면제한다.

2. 재산세액이 인하한 임대료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합계액을 한도로 재산세액을 공제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하지 아니한다.

1. 「주택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

2.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임대차 계약인 경우

3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인 경우

○ 자동차세

- 확진자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부과되는 2020년 1기분 자동차세를 면제한다.

- 최초로 감면된 자동차 1대에 한하며, 확진자의 경우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소유 자동차 및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도 포함한다.

마. 감면방법 : 직권 또는 신청

바. 기타사항

○ 본 동의안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하고,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.

사. 참고사항

- 감면추계액 : 불입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
 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
 -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(지방세 감면규모 등)
 -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
 -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(소상공인의 범위 등)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 기준 통보
(도 세정담당관-1587, 2020. 2. 6.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정 은

- 본 『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』 은
 -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제활동과 소비심리의 급격한 위축으로 직·간접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고 피해 조기 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얻어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안임.
- 검토 결과,
 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에서는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
- 본 동의안은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2020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함으로써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, 감면조치는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확진자, 격리자, 소상공인, 중소기업 등에 대한 2020년 주민세 균등분, 재산세(주택 및 건축물), 1기분 자동차세 감면액은 약 9억 3천만원 정도로 예상되며,
- 감면대상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고 적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